

# 심판자격 및 교육 규정

2013년 12월 18일 제정  
2017년 1월 24일 개정  
2018년 1월 23일 개정  
2019년 1월 21일 개정  
2022년 6월 27일 개정  
2023년 4월 27일 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대한민국농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심판의 자격, 교육, 양성 및 배정과 관리 등 심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 규정은 협회 심판원, 심판위원회 등 심판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.

## 제 2 장 심판원 구분 및 교육 등

**제3조(심판의 정의)** 심판원(Referee)이라 함은 협회가 발행하는 심판자격증을 취득한 후 협회, 시·도농구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, 협력단체에서 심판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.

**제4조(심판원의 등록 및 활동)** ① 자격증이 부여된 심판원은 심판활동을 위해서 협회에 등록을 필해야 하며, 등록양식, 절차 등 등록에 대한 세칙은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② 심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협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강습회를 이수하고 체력테스트에 합격해야 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체력테스트를 면제한다.

1. 심판자격증 취득, 기타 연수 등의 과정에서 최근 6개월 이내 협회가 인정하는 체력테스트에 합격한 자

2. 당해연도 해외국가 협회에서 체력테스트를 통과한 자로 해당국가 협회의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
  3. 당해연도 강습회를 이수한 3x3 심판원
- ③ 해외에서 심판자격을 취득한 자는 해당 국가협회의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 협회 심의를 거쳐 자격이 부여되고 전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체력테스트를 거쳐 당해연도 심판원으로 등록, 활동할 수 있다.
- ④ 심판원의 활동연령은 만60세까지로 한다. 단, 체력테스트에 합격한 자는 예외로 한다.
- ⑤ 3x3 심판원의 활동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.

**제5조(심판원의 구분)** 심판원은 협회 발급 자격증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.

1. 5x5 심판 (1~3급)
2. 3x3 심판 (1~3급)

**제6조(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)** ①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에 대한 모든 권한은 협회에 있다.

② 협회는 자체교육 또는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.

**제6조2(3x3 심판자격 부여 등)** ① 3x3 심판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17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  2. 종합병원 등의 건강검진(신체검사)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자
  3.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② 3x3 심판자격증은 전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협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전문교육을 받고 각 급수별 자격시험의 필기 및 실기 평가에서 합격(3급-60점 이상, 2급-70점 이상, 1급-80점 이상)한 자에게 부여한다.
-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기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.
1. FIBA, FIBA ASIA, 국가협회가 주최한 3x3 강습회, 클리닉 등 3x3 전문심판 교육과정 수료자
  2. 승급시험 대상자의 경우 협회, 시·도농구단체, 전국규모연맹체, 협력단체(KBL, WKBL)에서 주최·주관한 3x3 공식 5개 대회 이상의 심판으로 활동한 자
- ④ 각 급수별 심판교육 프로그램, 승급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
⑤ 각 급수별 심판 활동영역은 별표 4와 같다.

**제7조(3급 심판 교육 및 자격부여)** ① 3급 심판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17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2. 종합병원 등의 건강검진(신체검사)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자
3.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② 3급 심판자격증은 전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2일간(15시간 이상 수강) 의 교육기간 수료 후 필기시험에서 합격(60점)하고 체력테스트(FIBA기준-셔틀런: 남자 58회, 여자 48회)를 통과한 자에게 부여한다.

단,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등록된 현역 선수는 체력테스트를 면제한다.

③ 3급 심판 활동영역은 별표 3과 같다.

**제8조(2급 심판 교육 및 자격부여)** ① 2급 심판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3급 심판원으로 2년 이상 경과하였거나, 신인심판교실 이수자
2. 종합병원 등의 건강검진(신체검사)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자
3.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
4.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② 2급 심판자격증은 전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2급 승급 필기 및 실기 평가에서 합격(70점이상)하고 체력테스트(FIBA기준-셔틀런: 남자 68회, 여자 52회) 를 통과한 자에게 부여한다.

③ 2급 심판 승급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
④ 2급 심판 활동영역은 별표 3과 같다.

**제9조(1급 심판 교육 및 자격부여)** ① 1급 심판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2급 심판원으로 2년 이상 경과하였거나, 특수강습회를 이수한 자로서 심판 위원회가 추천한 자
2. 공식대회 50경기 이상 주.부심으로 활동한 자
3. 종합병원 등의 건강검진(신체검사)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자
4. 협회가 실시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
5.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② 1급 심판 자격증은 전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1급 승급 필기 및 실기 평가에서 합격(80점 이상)하고 체력테스트(FIBA 기준-셔틀런: 남자86회, 여자66회)를 통과한 자

③ 1급 심판 승급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
④ 1급 심판 활동영역은 별표 3과 같다.

**제10조(심판원의 배정)** ① 심판원의 배정은 심판위원회(위원장) 결정에 의한다.

② 최근 1년 이상 심판배정을 받지 못한 자는 보수교육의 이수와 체력측정 후 배정 받아 활동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심판원의 권한)** 심판원은 경기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을 갖는다.

**제12조(심판원의 의무)** 심판원은 판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1. 심판으로서의 권위와 품위 및 도덕성을 유지할 의무
2. 경기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할 의무
3. 심판원은 경기종료 후 즉시 경기보고서를 심판위원장에 제출할 의무
4.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건보고서를 제출할 의무
5.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

**제13조(심판원의 활동정지)** 활동정지라 함은 심판원의 심판활동의 일시적인 정지를 말하며 심판위원회의 건의에 의거 본회 이사회가 결정한다.

**제14조(심판원의 상벌)** 심판위원회는 심판원, 심판강사 기타 심판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포상 또는 징계를 건의하고, 심판배정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포상건의 대상 : 공로가 크고 타의 모범이 된 자
2. 징계건의 대상
  - (1) 경기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자
  - (2) 승부를 조작하였거나 조작을 교사한 자
3. 배정금지 대상
  - (1) 전항의 징계대상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은 자(영구 배정금지)
  - (2) 경기규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판정을 한 자
  - (3) 심판위원회의 심판배정 및 공지사항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

않고 거부한 자

(4) 기타 타인의 비난을 받을 만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

**제15조(암행감찰제도)** 본회는 제14조의 기능강화를 위해 암행감찰제도를 운영하고, 그 기능과 권한 및 기타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.

**제16조(심판원의 자격소멸)** 자격소멸이라 함은 징계 등에 의한 자격중의 박탈, 본인의 자격증 반납, 또는 개인적인 유고 등으로 심판의 자격이 영구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, 자격의 소멸은 협회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**제17조(심판원의 수당)** 심판원 수당은 심판위원회의 건의에 의해 협회 이사회가 결정한다.

**제18조(심판원의 보호)** 심판원은 심판활동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장 내, 외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는다.

1. 경기장 도착시부터 출발시간까지 어떠한 신체적, 정신적 공격으로부터의 보호
2. 경기단체 또는 대회 주최기관이 제기한 징계 및 징계 해제 심사 소청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,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언 및 항변 할 권리

**제19조(보험가입)** 심판원의 계약기간 중 원활한 활동 및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협회는 일정금액의 심판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.

**제20조(심판사관학교 또는 신인심판교실 운영)** 협회는 35세 이하의 신인심판원 양성을 위해 “심판사관학교” 또는 신인심판교실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제반규칙 등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21조(심판강사 자격요건 및 승인)** 심판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수석강사 : 협회가 추천한 자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
  - (1) FIBA, FIBA ASIA 심판강사로 최근 1년 이내 강사로서 활동경력이 인정된 자
  - (2) 협회 심판강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
2. 초빙강사 : 협회가 추천한 자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
  - (1) 1급 심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또는 국제심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
  - (2)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
  - (3) 기타 대학교수로서 체육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

**제22조(승급시험 불합격자의 재응시 등)** ① 각급 심판 승급 평가시험 불합격자는 시험일로부터 3급 심판은 3개월, 2급 심판은 6개월, 1급 심판은 1년 지난 후에 재응시 할 수 있다.

- ② 이론 및 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교육과정부터 재수강해야 한다. 단, 체력 테스트의 경우 당해연도 내에 보수교육에서 재평가받을 수 있다.
- ③ 승급시험은 중앙강습회에서만 한다. (단, 3x3 심판 승급시험은 예외이다)
- ④ 프로농구 현역 심판의 승급(2급→1급) 시험 시 실기평가는 면제한다.

**제23조(외국기관 발급 자격증)** FIBA, FIBA ASIA 또는 각국 농구협회 주관의 심판 교육과정에 참가하여 발급 받은 공인자격증은 협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**제24조(수료 및 자격증 소지자 공지)** 협회의 심판교육 수료 및 자격증 보유 현황은 연중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25조(무자격 심판의 활동금지)** 협회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.

**제26조(심판교육 평가와 계획수립)** 협회는 당해연도 심판교육과정에 관한 평가 분석을 매년 12월에 실시하며, 당해연도 심판교육과정 계획은 전년도 12월 까지 협회 이사회를 통과하도록 한다.

## 제 3 장 보수교육

**제27조(정의)** 보수교육이라 함은 “협회” 자격증을 소지한 심판원의 자질향상 및 보강을 위하여 협회가 실시하는 사후 교육을 의미한다.

**제28조(목적)** 보수교육은 다음의 목적으로 실시한다.

1. 심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상당기간 심판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심판원의 능력 개선과 보강
2. 현직 심판원의 능력 개선과 보강

**제29조(대상)** 보수교육은 협회의 심판원 자격증을 소지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 단, 프로에 소속된 심판원은 별도기준을 정하여 실시한다.

**제30조(교육기간)** ① 보수교육은 2일~3일간, 총 15시간 ~ 20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한다.

② 매년 12월에 실시한 보수교육은 다음연도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31조(교육내용)** 보수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농구심판 이론과 실제의 재교육
2. 경기규칙의 적용과 실제

3. 국제경기의 모델분석
4. 심판자질 향상에 필요한 소양교육
5. 기타 심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

**제32조(보수교육의 권한 및 위임)** ① 보수교육의 전반적인 권한은 협회에 있다.  
② 3급 심판 및 2급 심판 보수교육은 연 1회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, 강사는 협회가 지원한다.  
③ 3급 심판 및 2급 심판 보수교육을 위임받은 타 기관은 교육계획과 결과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.

**제33조(의무수강 및 미필자에 대한 제재)** ① 자격증을 가진 모든 심판원은 자격 취득년도 이후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(체력테스트 포함)을 이수해야 하며, 이수 시간은 15시간 ~ 20시간으로 한다.  
② 전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판원 자격이 당연 정지되며, 보수교육(체력테스트 포함) 이수 이후에 그 자격이 회복된다.  
③ 3x3 심판은 체력테스트가 면제된다.

**제34조(교육면제 대상)** 보수교육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을 이행한 심판원은 심의 후 보수교육을 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. 단, 수료증 및 해당서류 사본을 필히 협회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.

1. FIBA, FIBA ASIA, 또는 각국 농구협회가 주최한 심판교육과정 수료자
2. 타 기관이 주최한 심판교육과정 수료자

## 부 칙(2014. 4. 1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 의 승인(2013.12.18.)을 받아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2017. 1.24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 의 의결(2017. 1.24.)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① 舊 NABA(전국농구연합회)가 발행한 심판증을 소지한 자와 신규 KBA 심판증으로 교체 발급받은 자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FIBA기준 체력테스트를 유보하고, 심판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, 2018년 1월 1일 이후 불허한다.

- ② NABA(전국농구연합회) 심판증 소지자는 KBA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심판 강습회를 수료할 경우 신규 KBA 심판증을 발급한다. 단, KBA 심판증 교체 발급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**부 칙(2018. 1.23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 의사결정(2018. 1.23.)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 칙(2019. 1.21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 의사결정(2019. 1.21.)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다만,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각종 클리닉, 강습회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.

## **부 칙(2022. 6.27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(2022. 6.27.)를 통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각종 강습회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## **부 칙(2023. 4. 27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 의사결정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2제1항제1호는 2023년 7월부터 시행한다.

별표 1

☐ 수강료(교재대 포함), 응시료 및 심판증 발급비 (재발급 시 비용 동일)

| 심판자격              | 관련비용 | 금 액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3급                | 수강료  | 50,000원 이상 |
|                   | 응시료  | 10,000원    |
|                   | 발급비  | 20,000원    |
| 2급                | 수강료  | 50,000원 이상 |
|                   | 응시료  | 30,000원    |
|                   | 발급비  | 30,000원    |
| 1급                | 수강료  | 50,000원 이상 |
|                   | 응시료  | 50,000원    |
|                   | 발급비  | 50,000원    |
| 신인심판교실(2급)<br>8주간 | 수강료  | 200,000원   |
|                   | 응시료  | 30,000원    |
|                   | 발급비  | 30,000원    |
| 3x3               | 수강료  | 50,000원 이상 |
|                   | 응시료  | 10,000원    |
|                   | 발급비  | 20,000원    |

별표 2

☐ 시.도지부 경기.심판강습회 강사 경비 지급기준

| 구 분 |           | 주 강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강사     | 비고  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강사료 | 1일 4시간 이상 | 20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,000원 |      |
|     | 1일 4시간 미만 | 10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,000원  |      |
| 여 비 | 교통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열차이용 : KTX</li> <li>고속버스 : 우등</li> <li>개인차량 : 거리계산 주유비</li> </ul> |          |      |
|     | 숙박비       | 2인 1실 6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실비집행 |
|     | 식 비       | 1식 1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
※ 상기 경비는 주관 시.도지부에서 수강료 중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※ 강사구성 : 심판부문 - 주 강사 1명, 보조강사 1~2명

경기부문 - 주 강사 1명, 보조강사 1명

별표 3

□ 심판자격별 활동영역

| 심판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체력테스트<br>(합격기준) |     | 심판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남자              | 86회 | 전국규모(생활체육 포함)대회 모든<br>경기 담당           | 기존 1급<br>심판만 해당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자              | 66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남자              | 68회 | 2급 심판 자격으로 활동<br>↓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자              | 52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2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남자              | 68회 | 전국규모대회 초등부 이하 경기<br>전국생활체육대회 모든 경기 담당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자              | 52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3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남자              | 58회 | 만 19세 이상으로 생활체육<br>시.도(시.군.구) 지부 대회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자              | 48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※ FIBA 액티브 국제심판: 전국규모(생활체육 포함)대회 및 국제대회 경기 담당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별표 4

□ 3X3 심판자격별 활동영역

| 3X3 심판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판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국규모(생활체육 포함)대회 모든 경기 담당         |     |
| 2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3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만 19세 이상으로 생활체육 시.도(시.군.구) 지부 대회 |     |
| ※ 3x3 FIBA 액티브 국제심판: 전국규모(생활체육 포함)대회 및 국제대회 경기 담당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
별표 5

□ 협회 주관 경기.심판강습회 강사로 및 경비 지급기준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주강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강사        | 비 고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강사료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25,000원/1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,000원/1시간 |      |
| 여 비<br>(서울, 인천,<br>경기 외 지역) | 교통비 | · 열차이용 : KTX<br>· 고속버스 : 우등<br>· 개인차량 : 거리계산 주유비 |             | 실비집행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숙박비 | · 2인 1실 6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식비  | · 1식 1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